당진시의회 공고 제2021 - 2호

아래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당 진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조례안	발의의원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영훈 의원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종억 의원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조상연 의원

2.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당진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①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②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355-1901), 전자우편(mijinuli@korea.kr), 직접방문 등. **단, 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마. 기타 문의 사항은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350-48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각 1부

2. 예고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끝.